

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
곽동환 의원, 박영동 의원

1. 제안이유

양질의 일자리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주 요인으로써, 중소기업 육성·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유치 및 지원과 출자·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나.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 정비(안 제3조제1항, 제4조, 제16조)
- 다.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 규정(안 제16조의2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기술보증기금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군 지역내”를 “군 지역 내”로, “군역 내”를 “군 지역 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달성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”로, “기업을 유치하고”를 “기업유치 및”으로, “촉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”을 “촉진하기 위한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기업유치 및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8조에 따른다”를 “제8조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민법 제777조”를 “「민법」 제777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활동 촉진 지원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” 를 “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중소기업의 기술개발” 을 “기술개발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고용촉진” 을 “중소기업 고용촉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업” 을 “중소기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중소기업” 을 “기업” 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출연 등) 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, 출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·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 촉진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기업유치”란 군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시설의 군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<u>군 지역내</u> 기업의 설립, 이전 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<u>군역 내</u>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제3조(책무) ① <u>달성군수</u>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<u>기업을 유치하고</u> 건전한 기업 활동을 <u>촉진하여</u>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에</u>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</u>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군 지역 내</u> ----- ----- <u>군 지역 내</u> -----.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책무) ①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수</u> ----- <u>기업유치 및</u> ----- ----- <u>촉진하기 위한</u> ----- -----</p>

소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
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
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4조(기업지원위원회 설치) 군수는
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
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
업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
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 략)

③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에
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
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에
따른다.

④ (생 략)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
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
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관
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
할 수 없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5조(우선구매 판로 지원) ① (생 략)

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·외 시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업지원위원회 설치) -----
기업유치 및 건전한 기업 활동을
촉진하기 위한 -----

-----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
--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-----
--- 「민법」 제777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우선구매 판로 지원) ① (생 략)

② -----

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·홍보하고,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 -----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) 군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활동 촉진 지원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) ----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-----

 -----.

1.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지식 재산 창출 지원사업
2. (생략)
3.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보조금, 채용장려금, 취업장려금 등 인력 지원 사업
4. 기업의 경쟁력 촉진에 필요한 육성자금 지원사업
5. (생략)
6.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

1. 기술개발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중소기업 고용촉진-----

4. 중소기업-----

5. (현행과 같음)
6. 기업-----

7.·8. (생략)

<신설>

제23조(준용) 보조금의 집행·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출연 등) 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, 출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·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4.1.9. 타법개정, 2024.5.17. 시행)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□ 「지방재정법(법률)」(2023.8.8. 타법개정, 2024.5.17. 시행)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기술보증기금법(법률)」(2022.10.18. 일부개정, 2023.4.19. 시행)

제13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2. 정부의 출연금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.

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(年率)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.